

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

[시행 2025. 1. 9.] [행정안전부령 제542호, 2025. 1. 9., 일부개정]

- 제1조(목적)
- 제2조(설립인가 신청서)
- 제3조(설립인가서의 발급 등)
- 제4조(출자증서·출자금통장의 발급)
- 제5조(출자증서·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)
- 제5조의2(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)
- 제5조의3(축의·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)
- 제6조(공제규정)
- 제6조의2(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)
- 제7조(위원장의 직무)
- 제8조(위원회의 운영 등)
- 제9조(간사와 서기)
- 제10조(운영세칙)
- 제11조(분쟁조정 신청서의 서식 등)
- 제11조의2(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)
- 제11조의3(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)
- 제11조의4(행정처분의 세부기준)
- 제12조(회원의 검사 청구)
- 제13조(준용규정)



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

[시행 2025. 1. 9.] [행정안전부령 제542호, 2025. 1. 9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 (지역금융지원과) 044-205-3946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새마을금고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29.]

제2조(설립인가 신청서) 「새마을금고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(이하 “금고”라 한다)의 설립인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29.]

제3조(설립인가서의 발급 등) 금고의 설립인가권자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을 인가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29.]

제4조(출자증서·출자금통장의 발급) 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면 출자금 원장(元帳)에 적은 후 이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을 발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29.]

제5조(출자증서·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) 제4조의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, 이사장이 기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1. 명칭
2. 발행 연월일
3. 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
4. 회원가입 연월일
5.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및 금액
6. 출자증서·출자금통장의 양도 제한을 표시하는 사항

[전문개정 2007. 10. 29.]

제5조의2(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) ① 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(법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.

②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“도로·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”란 도로·도로변·광장·공터·주민회관·시장·점포·공원·운동장·주차장·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.

1. 선박·여객자동차·열차·전동차·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
2. 병원, 종교시설, 극장, 금고 사무소·사업장의 안(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)

[본조신설 2023. 10. 25.]

제5조의3(축의·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)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·부의금품, 음식물,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축의·부의금품(화환·화분을 포함한다): 5만원 이내
2.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음식물: 3만원 이내
3.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답례품: 1만원 이내

4.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의례적인 선물: 3만원 이내
 [본조신설 2023. 10. 25.]

제6조(공제규정) 법 제68조 및 「새마을금고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3조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
 - 가. 공제목적, 공제사업의 종류 및 피공제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
 - 나. 공제료의 수납, 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
2.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
 - 가. 공제금액 및 공제기간에 관한 사항
 - 나. 공제금의 지급사유
 - 다. 공제계약의 무효원인
 - 라. 공제자의 면책사유
 - 마. 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의 이행시기
3. 공제료에 관한 사항
 - 가.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
 - 나. 미수공제료의 계상범위 및 과태금 부과에 관한 사항
 - 다.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
 - 라. 미경과공제료에 관한 사항
4.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에 관한 사항
 - 가. 적립금과 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
 - 나.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
 - 다. 가입자 배당준비금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07. 10. 29.]

제6조의2(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) 금고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공제대표이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: 중앙회의 신용공제대표이사
2.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: 행정안전부장관

[본조신설 2025. 1. 9.]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법 제69조제1항의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29.]

제8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회는 영 제35조에 따른 분쟁조정 심의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·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법원의 판결·화해·조정 등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
2.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

[전문개정 2007. 10. 29.]

제9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몇 명 둔다.

- ② 간사와 서기는 중앙회 소속 직원 중에서 중앙회장(이하 "회장"이라 한다)이 임명한다.<개정 2011. 9. 9.>
-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,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29.]
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29.]

제11조(분쟁조정 신청서의 서식 등) ① 영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
- ② 회장은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 9. 9.>
- ③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 요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
- ④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29.]

제11조의2(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)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 <개정 2023. 10. 25.>
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.
 1. 견책 이상의 제재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: 1단계 위의 제재처분
 2.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: 그 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1단계 아래로 감경할 수 있다.
 1.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
 2.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한 경우
- ④ 수 개의 위반행위 중 적발된 일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한 후 나머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1.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제재처분의 사유에 포함하였다도 제재처분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
 2.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제재처분의 사유로 하면 제재처분의 수준이 높아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준을 고려하여 별도로 제재처분을 할 것

[본조신설 2018. 6. 28.]

제11조의3(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) ① 금고 또는 중앙회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재처분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제재처분 조치를 하고,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요구 내용과 다르게 제재처분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요구 내용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금고 또는 중앙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제재처분 조치를 하고,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가 제2항 전단의 요구 내용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요구 내용과 다르게 제재처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직접 제재처분 조치(임원만 해당한다)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금고 또는 중앙회는 전단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 내용과 다른 제재처분 조치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 조치를 하는 경우(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제재처분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해당 임원과 금고 또는 중앙회

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 이 경우 금고 또는 중앙회는 해당 제재처분 사실을 인사관계 서류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또는 중앙회 임직원의 제재처분 조치에 필요한 세부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23. 10. 25.]

[중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<2023. 10. 25.>]

제11조의4(행정처분의 세부기준)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[본조신설 2018. 6. 28.]

[제11조의3에서 이동 <2023. 10. 25.>]

제12조(회원의 검사 청구) ① 회원은 법 제81조에 따른 검사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·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적은 검사청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4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청구를 받으면 회장에게 해당 금고를 검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08. 3. 4., 2011. 9. 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금고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,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검사를 청구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.<개정 2008. 3. 4., 2011. 9. 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[전문개정 2007. 10. 29.]

제13조(준용규정)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금고"는 각각 "중앙회"로, "이사장"은 각각 "회장"으로 본다. <개정 2011. 9. 9.>

[전문개정 2007. 10. 29.]

부칙 <제542호, 2025. 1. 9.>

이 규칙은 202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- [별표 1] 선거운동 방법 세부사항(제5조의2제1항 관련)
- [별표 1의2] 제재처분의 세부기준(제11조의2제1항 관련)
- [별표 2] 행정처분의 세부기준(제11조의4 관련)
- [별지 제1호서식]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서
- [별지 제2호서식] 새마을금고 설립인가서
- [별지 제3호서식] 분쟁조정 신청서
- [별지 제4호서식]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
- [별지 제5호서식] 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요구
- [별지 제6호서식] 분쟁조정 결과 통지서